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세감면조례안
審查報告書

1994. 12.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26일
구청장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3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0회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제2차 위원회(1994년 1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財務局長 朴忠會)

가. 제안이유

○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 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 조례외 15개중 11개는 조례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 만료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 및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감면확대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 사회교육문화시설지원을 위한 감면
-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専門委員 趙大顯)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8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이며 영등포구세 감면조례 제정안은 현행조례 16개 조례중 '94. 12. 31 자동폐지되는 적용시한 규정조례 11개와 무기한 규정조례 5개를 감면내용별 각각의 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구청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4. 12월 국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수정의결되어야 하겠음.

4.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임병섭 위원의 1인

나. 수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어 구청제출안의 수정을 하고자 함.

다. 수정주요골자(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 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u>인구</u> <u>100만이상 시지역에</u> <u>서</u>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 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의 <u>100분의 50</u> (종 합토지세는 과세표 준액의 <u>100분의 50</u>) 을 경감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 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의료법 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를 <u>면제</u>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의안	280
번호	

제출년월일 : 1994. 1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목적에 따라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 15개

증 11개는 조례적용 시한이 94년 12월 31일 만료되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축소 및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감면확대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안 제2장)
- 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3장)
- 다. 사회교육문화시설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4장)
- 라.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5장)
- 마.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안 제6장)
- 바.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 8, 9조
-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다. 기타 : 준칙사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영 등 포 구

차 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장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제 2 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 3 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제 3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4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 4 장 사회교육문화시설지원을 위한 감면

제 5 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 6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제 7 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 5 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 8 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 9 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 10 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제 6 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 11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 12 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제 13 조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감면

제 14 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 15 조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제 7 장 보 칙

제 16 조 감면신청등

제 17 조 시행규칙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장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p> <p>제3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제5조(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p>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
--	---

구안의 부동산

제5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주장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직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 년도 4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text{연간수입금액} = \frac{\text{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text{영업기간 (일수)}} \times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9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차장·차량기지·정비창·궤도부설·전진기지·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4조(도시정비정돈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5조(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 2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16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5.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별표 1〉 상이 등급 분류표

급 수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급		108, 109, 111, 112, 113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 호수 자)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 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세 감 면 신 청 서				처 리 기 간
				7 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 면 내 용	세 목	년 도 / 기 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합 계			
감 면 사 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영 등 포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